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의 안 번 호	758

동의연월일 : 2008. 8. 26.
동 의 자 : 의 장

주 문

가. 최근 남북관계는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건의 해결 실마리를 찾지 못하는 등 악화일로에 있다. 이와 같은 경색된 남북관계 현안을 타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안과 민족의 공존 및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의 교류·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고 국회차원에서 관련 법안의 심사·처리 등을 위하여 국회법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 내에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나. 위원수는 18인으로 한다.

다. 특별위원회의 활동기한은 2009년 8월 25일까지로 한다.

제안이유

제17대 국회에서는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04년 7월 9일 구성) 및 「민족화해와 번영을 위한 남북평화통일특별위원회」('06년 6

월 30일 구성)가 구성되어 평화적인 북핵 문제 해결과 성공적인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강구 등 남북한 간의 교류·협력 증진과 남북관계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음.

그러나 지난 3월에는 북한 당국의 일방적인 요구에 따라 개성공단지역에 위치한 남북교류협력협의사무소에서 정상적으로 근무 중이던 우리측 직원이 철수하였고, 7월에는 금강산을 관광 중이던 우리 국민이 북측에 의하여 피살되었지만, 우리 정부의 정확한 진상조사에 북측이 전혀 협조하지 않고 있는 등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있는 실정임.

이러한 남북관계의 경색 상황을 타결하기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며, 나아가 국민적 합의에 기반 하에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필요성에 따라 여·야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관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는 것임.